

# 지속가능발전법 전부 개정 법률(안)

제안자

한국시민사회SDGs네트워크(SDGs시민넷)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유엔글로벌콤팩트한국협회

한국노총

## □ 글 순서

1. 제20대 국회 발의 및 시민사회 제안 법안별 특징 비교 / 02
2. 지속가능발전법 전부 개정법률안 / 04
3. 지속가능발전법 신구조문표 / 18

## 1. 제20대 국회 발의 법안별 비교

구분	현행(2010년 제정)	김상희의원 발의안	송옥주의원 발의안	김학용의원 발의안	시민사회 제안
발의시기	-	2017.06.12	2017.07.27	2019.9.10	-
개정범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속가능발전법 전부 개정</li> <li>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개정 의결을 전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속가능발전법 전부 개정</li> <li>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일부 개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속가능발전법 일부개정</li> <li>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일부 개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속가능발전법 전부 개정</li> <li>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일부 개정</li> </ul>
법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gt;지속가능발전법</li> <li>위계구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속가능발전기본법&gt;저탄소녹색성장법</li> <li>위계구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속가능발전기본법&gt;저탄소녹색성장법</li> <li>위계구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지속가능발전 기본법</li> <li>병행 구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속가능발전기본법&gt;저탄소녹색성장법</li> <li>위계구조</li> </ul>
목적 및 정의	1992년 기본개념 기준	2015년 유엔 SDGs 언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15년 유엔 SDGs 언급</li> <li>SD 기본원칙 명시</li> </ul>	2015년 유엔 SDGs 언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15년 유엔 SDGs 달성 기여 추가</li> <li>SD 이행 5대 기본원칙 추가</li> </ul>
책무기관	환경부장관, 광역자치단체장	대통령, 광역자치단체장	대통령, 광역자치단체장	국무총리, 광역자치단체장	대통령,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장
위원회 위상 및 역할	환경부 소속 심의자문위원회	대통령 소속 국가위원회/심의자문기구	대통령 소속 국가위원회/심의자문기구	국무총리 소속 심의자문위원회	대통령 소속 국가위원회/심의자문기구
위원회 지원조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분야별 전문위원회</li> <li>실무담당자 구성 가능(공무원 파견 또는 전문계약직 임용)</li> </ul>	전문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문위원회</li> <li>자문위원회</li> <li>사무국 구성 및 운영</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해관계자그룹 위원회(13개+@)</li> <li>주제분야 위원회</li> <li>사무국 구성 및 운영</li> </ul>
지역체계 및 지원	지방녹색성장위원회(광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방지속가능발전위원회(광역)</li> <li>지자체의 지방지속가능발전 활동을 위한 국가의 재정지원 명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방지속가능발전위원회(광역)</li> <li>위원회 지원 사무국 구성 또는 지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방녹색성장위원회(광역)</li> <li>지자체의 지방지속가능발전 활동을 위한 국가의 재정지원 명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방지속가능발전위원회(광역 및 기초)</li> <li>위원회 지원 사무국 구성 또는 지정</li> </ul>
이해관계자 협력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조사연구·교육·홍보 업무의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민관협력단체에 위임·위탁</li> <li>위임·위탁 단체에 대한 행정 및 재정 지원</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육·홍보·실천 업무의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민관협력단체 및 시민사회단체에 위임·위탁</li> <li>위임·위탁 단체에 대한 행정 및 재정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조사연구·교육·홍보 업무의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민관협력단체에 위임·위탁</li> <li>위임·위탁 민관협력단체에 대한 행정 및 재정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육·홍보·실천 업무의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민관협력단체 및 시민사회단체에 위임·위탁</li> <li>위임·위탁 단체에 대한 행정 및 재정 지원</li> </ul>

구분	현행(2010년 제정)	김상희의원 발의안	송옥주의원 발의안	김학용의원 발의안	시민사회 제안
국회/지방의회 보고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회: 국가기본전략 및 중앙추진체계의 변경 보고, 지속가능성보고서 제출</li> <li>• 지방의회: 기본계획 및 보고서를 지방의회에 보고 또는 제출</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회: 국가기본전략 및 중앙추진체계의 변경 보고, 지속가능성보고서 제출</li> <li>• 지방의회: 기본계획 및 보고서를 지방의회에 보고 또는 제출</li> </ul>
공론화장 및 포용적 참여체계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통령/광역/기초 지자체장의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 및 SDGs 수립 시 공론화장을 통한 의견수렴 의무 명시(5년 마다)</li> <li>• 대통령/광역/기초 지자체장의 SDGs 이행 평가보고 시 공론화장을 통한 의견수렴 및 발표 의무 명시(2년 마다)</li> <li>• 공론화장의 참여체계로써 다양한 이해관계자 중심 참여 권한 및 의무 명시</li> </ul>
정보공개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 지속가능발전 정보망 구축운영</li> <li>• 국가 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 지정 또는 전문기관 장에게 위탁</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광역/기초 지속가능발전 정보망 구축운영(전용 포털)</li> <li>• 국가/광역/기초 지속가능발전 연구센터 지정 또는 전문기관 장에게 위탁</li> </ul>

## 2. 지속가능발전법 전부개정법률안

### 1) 제안이유

지속가능발전은 1992년 리우선언으로 구체화된 친환경적인 경제·사회 발전담론으로써, 미래세대의 생존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재 세대의 기본 필요를 충족하는, 환경보전-경제성장-사회발전의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것을 말함. 유엔은 **2015년 제70차 유엔총회**에서 기후변화대응과 더불어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포용성을 강조하며, 지구적인 과제로써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채택한 바 있음.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핵심은 포용성, 통합성, 책임성, 투명성, 참여성을 확보하는 것으로써, 경제·사회·환경·제도 등 전 분야에 걸친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수립하고 정기적으로 이행을 점검할 수 있는 책임기구를 설치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속의 공론화 체계를 구축하는 것임.

한편, 코로나19 이후 뉴노멀의 주요 키워드는 생태, 포용, 통합, 파트너십인데, ‘지속가능발전’은 그 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2015년 ‘유엔 지속가능발전 목표(SDGs)’라는 형태로 구체화되어 경제, 사회, 환경, 제도, 국제협력에 대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음.

우리나라는 2000년 대통령 소속으로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발족되었고 2007년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이 제정되었으나, 2010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지속가능발전’이 ‘녹색성장’의 하위 개념이 되었고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은 일반법으로 개정되었고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환경부 소속으로 격하되었음. 그러나 **2015년 유엔SDGs 채택 이후 경제·사회·환경·제도 등 국제협력 거버넌스가 SDGs를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정부는 총괄 조정 거버넌스의 부재로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① ‘지속가능발전’과 ‘녹색성장’의 개념적 위계와 법률체계를 바로잡고,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으로부터 관련 조항을 이관 받아 국가 및 지방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을 수립·추진하고, ② 대통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장 소속으로 국가 또는 지방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③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K-SDGs)를 수립해 정부가 다양한 권리주체들과 함께 정기적으로 이행을 점검하고 실천을 위해 상호 협력하는 속의공론화장을 구성·운영하여, 2015년 이후 전 지구적 과제인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실현과 **코로나19 이후 뉴노멀 시대 준비를 위한 이행체계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 2) 주요내용

1. 경제성장, 사회발전, 환경보전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며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실현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정함(안 제3조).
2. 경제·사회·환경 분야에서 불평등을 해소하고, 이해관계자를 포함한 국민의 정책 의사 결정 참여를 촉진하며, 사회적 갈등을 예방·완화하는 것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함(안 제4조).
3. 국가와 지방의 지속가능발전전략을 실현하기 위하여 20년 단위의 국가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또는 10년 단위의 지방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을 수립·추진하도록 하고 5년마다 전반적으로 재검토하도록 함(안 제7조, 제8조).
4.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2년마다 중앙추진계획 또는 지방추진계획을 수립·추진하도록 함(안 제9조).
5. 국가 및 지방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소관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의 이행상황을 점검하여 그 결과를 수립·시행 기관에 송부하고,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관련 법령·조례 또는 행정계획의 제·개정 내용을 검토하여 해당기관에 통보하도록 함(안 제6조, 제10조).
6.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또는 지방 지속가능발전지표를 토대로 지속가능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담아 2년마다 지속가능성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 또는 제출한 후 공표하도록 함(안 제13조, 제14조).
7. 국가의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 그 산하에 전문위원회와 실무추진단을 두며,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에도 지방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15조).
8. 국가와 지방의 지속가능발전전략과 이행의 포용성, 통합성, 참여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 및 지방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수립·재검토(5년) 및 지속가능성 평가(2년) 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숙의 공론화 장을 마련하고 개방적이고 투명하며 책임있는 이해관계자 참여체계를 구축하도록 함(안 제20조, 제21조)
9. 지속가능발전의 이행수단으로서 국민에게 관련 지식·정보를 보급하고 이를 위하여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사회 교육을 강화하며, 관련 민관협력단체·행정협의회·시민사회단체에 대한 협력 및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 제23조, 제24조).

## 지속가능발전법 전부개정법률안

지속가능발전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지속가능발전을 이룩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여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속가능성"이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사회·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低下)시키지 아니하고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2.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경제의 성장, 사회의 안정과 통합 및 환경의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
3. "지속가능발전목표"란 2015년 제70차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2030 의제」를 바탕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표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지속가능발전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기존의 규모를 증시하는 성장이 아닌, 환경과의 상생 그리고 사회적 약자를 포용하는 분배정의 관점에서 경제성장을 추구한다.
2. 기회의 균등을 보장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며, 정책 의사결정 참여를 보장하고, 사회갈등을 완화함으로써 사회적 정의와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포용성을 추구한다.
3. 환경이 보전되고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미래세대의 필요의 충족을 제약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하도록 한다.
4. 환경·경제·사회 모든 분야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가 실현되도록 노력한다.
5. 국가 간 경계를 넘어 환경보전, 빈곤퇴치, 인류 보편적 권리 향상을 위해 전 지구적 차원에서 협력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환경·사회 전 분야에서 지속가능발전의 기본원칙이 반영되도록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에 관련된 국제적 합의 또는 규범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지속가능발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②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되는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하는 행정계획과 정책은 제3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추진의 기본원칙 및 제6조에 따른 국가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법령 제·개정에 따른 통보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법령을 제·개정하거나 국가기본전략과 관련이 있는 중·장기 행정계획 등을 수립·변경하려는 때에는 국가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개정하거나 지방기본전략과 관련이 있는 행정계획 등을 수립·변경하려는 때에는 해당 지방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통보 범위·기간·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2항에 따른 통보 범위·기간·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④ 국가위원회나 지방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받은 법령 또는 조례나 행정계획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관계 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국가위원회나 지방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받은 법령 또는 조례나 행정계획의 내용을 검토한 후 그 검토결과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관계 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라 국가위원회 또는 지방위원회로부터 검토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법령 또는 조례의 제·개정 또는 행정계획의 수립·변경에 그 검토내용을 적절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⑦ 제4항 및 5항에 따른 국가위원회의 검토 대상, 방법 및 통보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제4항 및 5항에 따른 지방위원회의 검토 대상, 방법 및 통보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제2장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등

제7조(국가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① 정부는 국가의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20년을 단위로 하는 국가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이하 “국가기본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본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속가능발전의 현황 및 여건변화와 전망에 관한 사항
2.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비전과 목표에 관한 사항
3.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추진전략과 원칙에 관한 사항
4.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경제·사회·환경·평화 및 제도·이행수단 및 파트너십의 기본정책 방향에 관한 사항
5. 유엔 SDGs와 연계한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및 지표 수립에 관한 사항
6. 직전 국가기본전략 및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에 대한 평가·보고에 관한 사항
7. 그밖에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국가기본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제18조에 따른 국가지속가능발전 위원회(이하 “국가위원회”라 한다)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와 대통령의 승인을 생략할 수 있다.

④ 정부는 경제적·사회적·환경적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고, 제14조에 따른 국가지속가능성보고서, 제10조에 따른 추진상황의 점검결과, 제8조에 따른 지방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제14조에 따른 지방지속가능성보고서를 참고하여 국가기본전략을 5년마다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기본전략의 수립방법·절차와 정부 내의 업무 분담체계 및 추진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지방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①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기본전략과 조화를 이루며 그 지방의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20년을 단위로 하는 지방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이하 “지방기본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지방기본전략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제6조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기본전략”은 “지방기본전략”으로 본다.

③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지역의 경제적·사회적·환경적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고, 국가기본전략, 제12조에 따른 추진상황의 점검결과 및 제14조에 따른 지방지속가능성보고서를 참고하여 지방기본전략을 5년마다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④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기본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



는 제15조에 따른 지방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 ⑤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기본전략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 이를 국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방기본전략의 수립방법 및 절차와 추진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9조(추진계획의 수립·추진)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기본전략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마다 중앙추진계획(이하 “중앙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중앙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가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 ③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기본전략을 추진하기 위하여 2년마다 지방추진계획(이하 “지방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 ④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지방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 ⑤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추진계획을 수립한 경우 지체 없이 국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추진상황의 점검) ① 국가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마다 중앙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정부에 송부하여야 한다.

-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국가위원회로부터 송부 받은 점검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추진계획을 수정·보완할 수 있다.
- ③ 지방위원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마다 지방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해당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④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지방위원회로부터 송부 받은 점검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추진계획을 수정·보완할 수 있다.

제11조(정책에 관한 의견의 제시) ① 국가위원회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② 지방위원회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의견을 제시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그 의견을 존중하고 이를 관계 법령 또는 조례의 제·개정이나 행정계획의 수립·변경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지속가능발전책임관의 지정)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속가능발전 책임관을 지정할 수 있다.

1.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국가기본전략 또는 지방기본전략 및 그에 따른 추진계획의 수립
2.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국가 및 지방 지속가능발전 목표 및 지표 수립
3. 제10조에 따른 국가기본전략 또는 지방기본전략 및 그에 따른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4.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국가 및 지방 지속가능성 평가 및 보고
5.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숙의공론화장 운영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체계 지원
6. 기타 국가위원회 또는 지방위원회가 위임한 사안 등

### 제3장 지속가능성 평가 및 보고

제13조(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 ① 국가나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반영하여 국가 지속가능발전지표 또는 지방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보급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단체와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② 국가위원회나 지방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에 따라 2년마다 국가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보급 및 국가지속가능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지방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보급 및 지방지속가능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14조(지속가능성 보고 및 공표) ① 국가위원회는 2년마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중앙추진계획 점검결과와 제12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속가능성 평가결과를 종합하는 국가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에게 보고한 후 공표(公表)하여야 한다.

- ② 지방위원회는 2년마다 제10조 제3항에 따른 지방추진계획의 추진 상황 점검결과와 제12조제2항에 따른 지방지속가능성 평가결과를 종합하는 지방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작성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한 후 공표하여야 한다.
- ③ 정부는 국가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토대로 국제연합에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이행상황을 제출한다. 이 때 필요한 경우 관련단체와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④ 제1항 및 2항에 따른 국가 및 지방 지속가능성보고서의 작성 시 다양한 이해관계자 그룹이 참여하는 숙의공론화장을 마련하고 의견을 수렴한다.

- ⑤ 제1항에 따른 국가지속가능성정보고서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2항에 따른 지방지속가능성정보고서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제4장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제15조(국가 및 지방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설치) ① 국가의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거나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 “국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문에 응하거나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소속으로 지방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6조(국가 및 지방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기능) 국가 및 지방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제6조에 따른 법령 및 행정계획에 대한 검토 및 통보 등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국가기본전략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3. 제9조에 따른 중앙 및 지방추진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4. 제10조에 따른 중앙 및 지방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5. 제11조에 따른 의견제시 등에 관한 사항
6. 제13조에 따른 국가 및 지방 지속가능발전지표의 작성과 국가 및 지방 지속가능성 평가에 관한 사항
7. 제14조에 따른 국가 및 지방 지속가능성정보고서의 작성 및 공표에 관한 사항
8. 제20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속의공론화장 마련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제21조에 따른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체계 구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0. 제22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지식·정보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11. 제23조에 따른 교육·홍보 등에 관한 사항
12. 제24조에 따른 국내외 협력 등에 관한 사항
13. 다른 법률과 대통령령 및 조례로 국가 및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14. 그밖에 대통령 및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자문이 필요한 사항

제17조(국가위원회의 구성 등) ① 국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당연직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의 지방위원회 위원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제21조에 따른 다양한 이해관계자 그룹을 기준으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 ③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한다.
-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 ⑤ 국가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관한 전문적인 검토를 위하여 전문위원회를 둔다.
- ⑥ 국가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위원회에 지속가능발전추진단을 둔다.
- ⑦ 국가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와 지속가능발전추진단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무총리령으로 정한다.

제18조(지방위원회의 구성 등) 지방위원회 구성은 국가위원회의 구성 기준을 준용하며, 지방위원회의 명칭·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19조(임직원의 파견 요청 등) ① 국가 및 지방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이나 법인·단체 등의 장에게 그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국가 및 지방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제20조(지속가능발전 숙의공론화 장 마련 및 운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 비전을 공유하고, 지속가능발전 추진 과정에 시민이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우리나라의 지속가능발전 정치 및 정책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속가능발전 숙의공론화장(이하 “숙의공론화장”이라 한다)을 마련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추진 시 숙의공론화장을 운영한다.
  1. 제7조에 따른 국가 및 지방 기본전략의 수립·변경 시(5년 마다)
  2. 제9조에 따른 중앙 및 지방 추진계획의 수립·변경 시(2년 마다)
  3. 제13조에 따른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의 작성 및 국가지속가능성 평가 시(2년 마다)
  4. 제14조에 따른 국가지속가능성보고서의 작성 및 공표 시(2년 마다)
- ③ 숙의공론화장은 개방성, 투명성, 포용성, 대표성, 책임성, 통합성을 기본원칙으로 운영하며, 세부사항은 국무총리령으로 정한다.
- ④ 숙의공론화장을 통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은 국가 및 지방위원회의 심의 시 반영하며, 의견서와 반영 결과를 지속가능발전 정보망을 통해 공개한다.

제21조(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체계 구축 및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포용적 관점 확보를 위하여, 숙의공론화장 운영 시 유엔의 다양한 이해관계자 그룹을 준용하여 참여체계를 구축한다.

- ② 다양한 이해관계자 그룹은 자발성과 독립성을 기본원칙으로 하며,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무총리령으로 정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이해관계자 그룹의 원활하고 책임있는 숙의공론화장 참여를 위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한다.

## 제5장 보칙

제22조(지속가능발전 지식·정보의 보급 등) ① 국가와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게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정보를 보급하고, 국민이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국가 및 지방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정보의 원활한 생산·보급 등을 위하여 지속가능발전정보망을 구축·운영한다.
- ③ 국가 및 지방위원회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정보망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④ 국가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정보망의 효율적인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기관의 장에게 지속가능발전 현황조사를 의뢰하거나 지속가능발전정보망의 구축·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료 제출의 범위, 관계 전문기관의 장에 대한 지속가능발전 현황조사의 의뢰 및 지속가능발전정보망의 구축·운영 또는 그 위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교육·홍보 등) ① 국가와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 및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속가능발전 관련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이를 관련 시민사회단체,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 ② 국가와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유치원·어린이집을 포함한 학교 및 사회시설 교육과 홍보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시민이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책과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일상생활에서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4조(국내외 협력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국가위원회와 지방위원회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긴밀하게 상호협력 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른 행정협의회 등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 협의회가 지방의 지속가능발전 실현을 위한 국내외 활동에 대하여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시민사회단체 등이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다양한 국내외 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민관협력단체, 관련 시민사회단체 및 국제협력단체가 국가와 지방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수행하는 국내외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포함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25조(국회 보고) ① 정부는 국가기본전략을 수립·변경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중앙추진계획을 수립·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관련 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정부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국가지속가능성보고서를 지체 없이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기본전략, 지방추진계획 및 제17조제2항에 따른 지방지속가능성보고서를 수립·변경 또는 작성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방의회에 보고 또는 제출하여야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조정에 따른 권한 및 업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규정에 따른 지방녹색성장위원회의 권한 및 업무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21조에 따른 지방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승계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8호 중 “ 「지속가능발전법」 ”을 “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으로 한다.

제9조 제2항 제3호 중 “정책 및 지속가능발전 정책”을 “정책”으로 한다.

제14조 제4항 제2호 중 “녹색기술·녹색산업, 지속가능발전 분야 등”을 “녹색기술·녹색산업 등”으로 한다.

제15조 제3호 중 “기본계획, 에너지기본계획 및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에”를 “기본계획 및 에너지기본계획에”로 한다.

제6장의 제목 중 “녹색생활 및 지속가능발전”을 “녹색생활”로 한다.

제49조 제목 중 “녹색생활 및 지속가능발전”을 “녹색생활”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녹색생활 및 지속가능발전”을 “녹색성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지속가능발전”을 “녹색성장”으로 한다.

제50조를 삭제한다.

제51조제1항 중 “녹색생활 및 지속가능발전의”를 “녹색생활의”로 한다.

제61조제2항 중 “지속가능발전”을 “녹색성장”으로 한다.

### 3. 지속가능발전법 신·구조문표

구분	현행	신규(시민사회 안)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속가능발전을 이룩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여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목적) 이 법은 지속가능발전을 이룩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여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속가능성"이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사회·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低下)시키지 아니하고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2.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경제의 성장, 사회의 안정과 통합 및 환경의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속가능성"이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사회·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低下)시키지 아니하고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2.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경제의 성장, 사회의 안정과 통합 및 환경의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 <b>3. "지속가능발전목표"란 2015년 제70차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2030 의제」를 바탕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표를 말한다.</b>
기본원칙	-	제3조(기본원칙) 지속가능발전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기존의 규모를 중시하는 성장이 아닌, <b>환경과의 상생</b> 그리고 사회적 약자를 포용하는 <b>분배정의 관점에서 경제성장</b> 을 추구한다. 2. 기회의 균등을 보장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며, 정책 의사결정 참여를 보장하고, 사회갈등을 완화함으로써 <b>사회적 정의와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포용성</b> 을 추구한다. 3. <b>환경이 보전되고</b>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미래세대의 필요의 충족을 제약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하도록 한다. 4. <b>환경·경제·사회 모든 분야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가 실현되도록 노력한다.</b> 5. 국가 간 경계를 넘어 환경보전, 빈곤퇴치, 인류 보편적 권리 향상을 위해 <b>전 지구적 차원에서 협력한다.</b>
이행주체	-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환경·사회 전 분야에서 지속가능발전의 기본원칙이 반영되도록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에 관련된 국제적 합의 또는 규범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한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b>지속가능발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b> ②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되는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하는 행정계획과 정책은 제3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추진의 기본원칙 및 제6조에 따른 국가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법령 제·개정에 따른 통보	-	제6조(법령 제·개정에 따른 통보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법령을 제·개정하거나 국가기본전략과 관련이 있는 <b>중·장기 행정계획</b> 등을 수립·변경하려는 때에는 <b>국가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b> 하여야 한다. ②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b>조례</b> 를 제·개정하거나 지방기본전략과 관련이 있는 <b>행정계획</b> 등을 수립·변경하려는 때에는 <b>해당 지방위원회에</b>

구분	현행	신규(시민사회 안)
		<p><u>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u></p> <p>③ 제1항에 따른 통보 범위·기간·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2항에 따른 통보 범위·기간·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p> <p>④ 국가위원회나 지방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받은 법령 또는 조례나 행정계획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관계 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p> <p>⑤ 국가위원회나 지방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받은 법령 또는 조례나 행정계획의 내용을 검토한 후 그 검토결과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⑥ 관계 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라 국가위원회 또는 지방위원회로부터 검토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법령 또는 조례의 제·개정 또는 행정계획의 수립·변경에 그 검토내용을 적절하게 반영하여야 한다.</p> <p>⑦ 제4항 및 5항에 따른 국가위원회의 검토 대상, 방법 및 통보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제4항 및 5항에 따른 지방위원회의 검토 대상, 방법 및 통보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p>
<b>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b>	<p><b>제7조(국가·지방이행계획협의의·조정) 중앙행정기관의장이나</b>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시·도지사”라 한다)는 다른 중앙행정기관이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시·도”라 한다)의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50조 제4항에 따른 중앙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이하“국가이행계획”이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지방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이하“지방이행계획”이라 한다)이 그 중앙행정기관 또는 시·도의 이행계획의 시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협의·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는 그 협의·조정사항에 관하여 제15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 또는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20조에 따른 해당 지방녹색성장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p> <p><b>제9조(추진상황의 점검) ①</b> 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마다 국가이행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p> <p>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송부받은 점검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이행계획을 수정·보완할 수 있다.</p> <p><b>제10조(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과의 연계)</b>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하는 행정계획과 정책이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49조에 따른 기본원칙과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b>제7조(국가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①</b> 정부는 국가의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u>20년을 단위로 하는 국가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이하 “국가기본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u></p> <p>② 국가기본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지속가능발전의 현황 및 여건변화와 전망에 관한 사항</li> <li>2.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비전과 목표에 관한 사항</li> <li>3.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추진전략과 원칙에 관한 사항</li> <li>4.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경제·사회·환경평화 및 제도·이행수단 및 파트너십의 기본정책 방향에 관한 사항</li> <li>5. <u>유엔 SDGs와 연계한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및 지표 수립에 관한 사항</u></li> <li>6. <u>직전 국가기본전략 및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에 대한 평가·보고에 관한 사항</u></li> <li>7. 그밖에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li> </ol> <p>③ 국가기본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제18조에 따른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 “국가위원회”라 한다)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와 대통령의 승인을 생략할 수 있다.</p> <p>④ 정부는 경제적·사회적·환경적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고, 제14조에 따른 국가지속가능성보고서, 제10조에 따른 추진상황의 점검결과, 제8조에 따른 지방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제14조에 따른 지방지속가능성보고서를 참고하여 국가기본전략을 5년마다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p> <p>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기본전략의 수립방법·절차와 정부 내의 업무 분담체계 및 추진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b>제8조(지방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①</b> <u>광역시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기본전략과 조화를 이루며 그 지방의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20년을 단위로 하는 지방 지속가능발전</u></p>



구분	현행	신규(시민사회 안)
	<p><b>제11조(법령제정·개정에 따른 통보 등)</b>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때에는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p> <p>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과 관련이 있는 중·장기행정계획을 수립·변경하려는 때에는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p> <p>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이행계획과 관련이 있는 행정계획을 수립·변경하려는 때에는 해당 지방녹색성장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p> <p>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통보기간 및 통보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3항에 따른 통보기간 및 통보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p> <p>⑤ 위원회나 지방녹색성장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통보받은 법령이나 행정계획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관계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p> <p>⑥ 위원회나 지방녹색성장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통보받은 법령 또는 행정계획의 내용을 검토한 후 그 검토결과를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⑦ 관계기관의 장은 제6항에 따라 위원회 또는 지방녹색성장위원회로부터 검토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행정계획의 수립·변경에 그 검토 내용을 적절하게 반영하여야 한다.</p> <p>⑧ 제6항에 따른 위원회의 검토 및 통보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지방녹색성장위원회의 검토 및 통보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p>	<p><b>기본전략(이하 "지방기본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b></p> <p>② 지방기본전략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제6조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기본전략"은 "지방기본전략"으로 본다.</p> <p>③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지역의 경제적·사회적·환경적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고, 국가기본전략, 제12조에 따른 추진상황의 점검결과 및 제14조에 따른 지방지속가능성보고서를 참고하여 지방기본전략을 5년마다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p> <p>④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기본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제15조에 따른 지방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p> <p>⑤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기본전략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 이를 국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p>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방기본전략의 수립방법 및 절차와 추진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p> <p><b>제9조(추진계획의 수립·추진)</b> ① <u>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기본전략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마다 중앙추진계획(이하 "중앙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u></p> <p>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중앙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가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p> <p>③ <u>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기본전략을 추진하기 위하여 2년마다 지방추진계획(이하 "지방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u></p> <p>④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지방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p> <p>⑤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추진계획을 수립한 경우 지체 없이 국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p><b>제10조(추진상황의 점검)</b> ① <u>국가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마다 중앙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정부에 송부하여야 한다.</u></p> <p>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국가위원회로부터 송부 받은 점검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추진계획을 수정·보완할 수 있다.</p> <p>③ <u>지방위원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마다 지방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해당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u></p> <p>④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지방위원회로부터 송부 받은 점검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추진계획을 수정·보완할 수 있다.</p>

구분	현행	신규(시민사회 안)
		<p><b>제11조(정책에 관한 의견의 제시)</b> ① <u>국가위원회</u>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p> <p>② <u>지방위원회</u>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p> <p>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의견을 제시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그 의견을 존중하고 이를 관계 법령 또는 조례의 제·개정이나 행정계획의 수립·변경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p><b>제12조(지속가능발전책임관의 지정)</b>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속가능발전책임관을 지정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국가기본전략 또는 지방기본전략 및 그에 따른 추진계획의 수립</li> <li>2.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국가 및 지방 지속가능발전 목표 및 지표 수립</li> <li>3. 제10조에 따른 국가기본전략 또는 지방기본전략 및 그에 따른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li> <li>4.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국가 및 지방 지속가능성 평가 및 보고</li> <li>5.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속의공론화장 운영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체계 지원</li> <li>6. 기타 국가위원회 또는 지방위원회가 위임한 사안 등</li> </ol>
	<p><b>제13조(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b> ① 국가는 지속가능발전지표를 작성하여 보급하여야 한다.</p> <p>② 제15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에 따라 2년마다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의 작성·보급 및 지속가능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b>제13조(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b> ① 국가나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반영하여 <u>국가 지속가능발전지표 또는 지방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u>하고 이를 보급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단체와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p> <p>② 국가위원회나 지방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에 따라 <u>2년마다 국가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성을 평가</u>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보급 및 국가지속가능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지방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보급 및 지방지속가능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p>
지속가능성 평가 및 보고	<p><b>제14조(지속가능성보고서)</b> ① 제15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2년마다 제13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결과를 종합하는 지속가능성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에게 보고한 후 공표(公表)하여야 한다.</p> <p>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지속가능성보고서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성보고서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b>제14조(지속가능성 보고 및 공표)</b> ① 국가위원회는 <u>2년마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중앙추진계획 점검결과와 제12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속가능성 평가결과를 종합하는 국가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에게 보고한 후 공표(公表)하여야 한다.</u></p> <p>② <u>지방위원회는 2년마다 제10조 제3항에 따른 지방추진계획의 추진 상황 점검결과와 제12조제2항에 따른 지방지속가능성 평가결과를 종합하는 지방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작성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한 후 공표하여야 한다.</u></p> <p>③ 정부는 국가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토대로 <u>국제연합에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이행상황을 제출한다.</u> 이때 필요한 경우 관련단체와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p> <p>④ 제1항 및 2항에 따른 국가 및 지방 지속가능성보고서의 작성 시 다양한 이해관계자 그룹이 참여하는 <u>속의공론화장을 마련하고 의견을 수렴한다.</u></p> <p>⑤ 제1항에 따른 국가지속가능성보고서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2항에 따른 지방지속가능성보고서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p>

구분	현행	신규(시민사회 안)
<b>지속가능 발전 위원회 구성</b>	<p><b>제15조(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설치)</b> 국가의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둔다.</p>	<p><b>제15조(국가 및 지방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설치)</b> ① 국가의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u>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거나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 “국가위원회”라 한다)</u>를 둔다. ②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u>필요한 자문에 응하거나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소속으로 지방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u>를 둔다.</p>
	<p><b>제16조(위원회의기능)</b>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수립·변경의 사전심의에 관한 사항</li> <li>2. 제7조에 따른 이행계획의 협의·조정에 관한 사항</li> <li>3.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이행계획의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li> <li>4. 제11조에 따른 법령 및 행정계획에 대한 검토 및 통보 등에 관한 사항</li> <li>5. 제13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의 작성 및 지속가능성 평가에 관한 사항</li> <li>6.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성보고서의 작성 및 공표에 관한 사항</li> <li>7. 제20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지식·정보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li> <li>8. 제21조에 따른 교육·홍보 등에 관한 사항</li> <li>9. 제22조에 따른 국내외 협력 등에 관한 사항</li> <li>10. 그밖에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고려하여야 할 주요 정책과 이와 관련된 사회적 갈등 해결에 관하여 환경부장관에 대한 자문이 필요한 사항</li> </ol>	<p><b>제16조(국가 및 지방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기능)</b> 국가 및 지방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6조에 따른 법령 및 행정계획에 대한 검토 및 통보 등에 관한 사항</li> <li>2. 제7조에 따른 국가기본전략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li> <li>3. 제9조에 따른 중앙 및 지방추진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li> <li>4. 제10조에 따른 중앙 및 지방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li> <li>5. 제11조에 따른 의견제시 등에 관한 사항</li> <li>6. 제13조에 따른 국가 및 지방 지속가능발전지표의 작성과 국가 및 지방 지속가능성 평가에 관한 사항</li> <li>7. 제14조에 따른 국가 및 지방 지속가능성보고서의 작성 및 공표에 관한 사항</li> <li><b>8. 제20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속의공론화장 마련 및 운영에 관한 사항</b></li> <li><b>9. 제21조에 따른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체계 구축 및 지원에 관한 사항</b></li> <li>10. 제22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지식·정보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li> <li>11. 제23조에 따른 교육·홍보 등에 관한 사항</li> <li>12. 제24조에 따른 국내외 협력 등에 관한 사항</li> <li>13. 다른 법률과 대통령령 및 조례로 국가 및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li> <li>14. 그밖에 대통령 및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자문이 필요한 사항</li> </ol>
	<p><b>제17조(위원회의 구성 등)</b>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고위공무원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시민사회단체, 학계, 산업계 등에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위촉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관하여 분야별로 전문적인 연구·검토를 하기 위하여 전문위원회를 둔다. ⑥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b>제17조(국가위원회의 구성 등)</b> ① 국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하되, <u>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이상</u>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당연직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의 지방위원회 위원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제21조에 따른 다양한 이해관계자 그룹을 기준으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③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⑤ 국가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관한 전문적인 검토를 위하여 전문위원회를 둔다. ⑥ 국가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u>국가위원회에 지속가능발전추진단을 둔다.</u> ⑦ 국가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와 <u>지속가능발전추진단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무총리령으로 정한다.</u></p>

구분	현행	신규(시민사회 안)
	<p><b>제18조(정책에 관한 의견의 제시)</b> ①위원회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라 의견을 제시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의견을 존중하고 이를 관계법령의 제정·개정이나 행정계획의 수립·변경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p><b>제19조(임직원의 파견요청 등)</b> ① 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이나 법인·단체 등의 장에게 그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p> <p>② 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 5에 따른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p>	<p><b>제18조(지방위원회의 구성 등)</b> 지방위원회 구성은 국가위원회의 구성 기준을 준용하며, 지방위원회의 명칭·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p> <p><b>제19조(임직원의 파견 요청 등)</b> ① 국가 및 지방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이나 법인·단체 등의 장에게 그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p> <p>② 국가 및 지방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p>
공론화장 및 포용적 참여 체계	-	<p><b>제20조(지속가능발전 속의공론화 장 마련 및 운영)</b>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 비전을 공유하고, 지속가능발전 추진 과정에 시민이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우리나라의 지속가능발전 정치 및 정책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속가능발전 속의공론화장(이하 “속의공론화장”이라 한다)을 마련한다.</p> <p>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추진 시 속의공론화장을 운영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7조에 따른 국가 및 지방 기본전략의 수립·변경 시(5년 마다)</li> <li>2. 제9조에 따른 중앙 및 지방 추진계획의 수립·변경 시(2년 마다)</li> <li>3. 제13조에 따른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의 작성 및 국가지속가능성 평가 시(2년 마다)</li> <li>4. 제14조에 따른 국가지속가능성보고서의 작성 및 공표 시(2년 마다)</li> </ol> <p>③ 속의공론화장은 개방성, 투명성, 포용성, 대표성, 책임성, 통합성을 기본원칙으로 운영하며, 세부 사항은 국무총리령으로 정한다.</p> <p>④ 속의공론화장을 통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은 국가 및 지방위원회의 심의 시 반영하며, 의견서와 반영 결과를 지속가능발전 정보망을 통해 공개한다.</p> <p><b>제21조(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체계 구축 및 지원)</b>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포용적 관점 확보를 위하여, 속의공론화장 운영 시 유엔의 다양한 이해관계자 그룹을 준용하여 참여체계를 구축한다.</p> <p>② 다양한 이해관계자 그룹은 자발성과 독립성을 기본원칙으로 하며,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무총리령으로 정한다.</p> <p>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이해관계자 그룹의 원활하고 책임있는 속의공론화장 참여를 위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한다.</p>
지속가능발전 연구개발 및 정보망	<p><b>제20조(지속가능발전지식·정보의보급등)</b> ① 정부는 국민에게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정보를 보급하고, 국민이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b>제22조(지속가능발전 지식·정보의 보급 등)</b> ① 국가와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게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정보를 보급하고, 국민이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구분	현행	신규(시민사회 안)
구축	<p>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정보의 원활한 생산·보급 등을 위하여 지속가능발전 정보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p> <p>③ 위원회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정보망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p> <p>④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정보망의 효율적인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기관의 장에게 지속가능발전 현황조사를 의뢰하거나 지속가능발전 정보망의 구축·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p> <p>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료 제출의 범위, 관계 전문기관의 장에 대한 지속가능발전 현황조사의 의뢰 및 지속가능발전정보망의 구축·운영 또는 그 위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② <u>국가 및 지방위원회</u>는 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정보의 원활한 생산·보급 등을 위하여 <u>지속가능발전정보망을 구축·운영한다</u>.</p> <p>③ 국가 및 지방위원회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정보망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p> <p>④ 국가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정보망의 효율적인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기관의 장에게 지속가능발전 현황조사를 의뢰하거나 <u>지속가능발전정보망의 구축·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u>.</p> <p>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료 제출의 범위, 관계 전문기관의 장에 대한 지속가능발전 현황조사의 의뢰 및 지속가능발전정보망의 구축·운영 또는 그 위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지속가능발전 교육 및 홍보	<p>제21조(교육·홍보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연구 및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속가능발전 관련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민관협력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p>	<p>제23조(교육·홍보 등) ① 국가와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u>조사 및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속가능발전 관련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이를 관련 시민사회단체,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u>.</p> <p>② 국가와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u>유치원·어린이집을 포함한 학교 및 사회시설 교육과 홍보 사업</u>을 수행함으로써 시민이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책과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일상생활에서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p>
국내외 협력	<p>제22조(국내외 협력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긴밀하게 상호협력 하여야 한다.</p> <p>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제21과 요하네스버그이행계획 등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약속과 규범들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협력하여야 한다.</p> <p>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1조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받은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민관협력단체가 국가와 지방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수행하는 국내외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포함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p>	<p>제24조(국내외 협력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국가위원회와 지방위원회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긴밀하게 상호협력 하여야 한다.</p> <p>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른 행정협의회 등 <u>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 협의회</u>가 지방의 지속가능발전 실현을 위한 국내외 활동에 대하여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p> <p>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시민사회단체 등이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다양한 국내외 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p> <p>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u>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민관협력단체, 관련 시민사회단체 및 국제협력단체가 국가와 지방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수행하는 국내외 활동</u>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u>운영비를 포함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u>을 할 수 있다.</p>
국회 보고	-	<p>제25조(국회 보고) ① 정부는 국가기본전략을 수립·변경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p> <p>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중앙추진계획을 수립·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관련 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p> <p>③ 정부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국가지속가능성보고서를 지체 없이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p>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기본전략, 지방추진계획 및 제17조제2항에 따른 지방지속가능성보고서를 수립·변경 또는 작성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방의회에 보고 또는 제출하여야 한다.</p>